

#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3일  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경영, 김제리, 김태수,  
김평남, 노승재, 박기열,  
박순규, 송아량, 홍성룡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,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「재난안전법」 및 「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에 따라 정밀안전진단,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 지원해왔음.
- 그러나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시행('20.5)됨에 따라 구청장이 '소규모 노후 건축물'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, 시장이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2조의1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물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1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〈신설〉</u>	<u>제2조의1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
문서번호

2021080600000034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도시계획관리위원회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원상 팀장  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8.06

회신일 : 2021.08.10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

○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리 지원 = 1,500,000천원  
= 25개 자치구×1개소×시비 지원단가×5년  
= 25개×1개소×12,000천원×5년

※ 시비 지원단가 :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‘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보고서(2020.5)’에서 제시하고 있는 12,000천원 적용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원상
예산분석관	박주용

☎ 02-2180-7954  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